

2024년 8월 불법어업 지도·단속 사전예고 안내문

□ 지도·단속 방향

- 무허가 조업, 허가구역 이탈 조업, 허가 외 어업 행위
 - 부설형 어업(안강망, 각망, 통발, 자망 등) 어구초과 사용 조업 행위
 - 당월 포획 금지 어종* 대상 포획 행위
- * (8월 포획 금지어종) 꽃게(6.21.~8.20.), 키조개(7.1.~8.31.), 주꾸미(5.11~8.31.)

□ 중점 확인사항

[해 상]

- (연안 선망) 허가구역 이탈 조업, 변형어구 사용 조업 여부 등 점검
- (각망, 승망, 낭장망) 무허가 조업, 구획 이탈 조업 점검
- (연·근해안강망) 어구사용량 초과부설 및 불법어구 사용·적재 여부 점검
- (기타) 어구실명제 위반, 그물코 규격 위반, 변형어구* 사용 행위 등 점검

- * ① 첫새우 포획 목적으로 세목망을 예인하며 조업하는 일명 '안경망'
② 해저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일명 '펌프형망'
③ 레저용 잠수장비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일명 '스킨스쿠버'

[육 상]

- (TAC) 오징어 TAC 위반행위(사매매, 포획실적보고 미제출) 집중 점검
- (수산물유통) 체장미달, 외포란 꽃게, 금어기 어종 대상 유통 점검
- (어선관리) 정박어선 대상 불법 증개축 및 태풍 발생 대비 안전설비 관리 실태 점검

□ 위반 시 처벌 규정

- 「수산업법」제40조 무허가(허가구역 이탈 조업 등)
* (사법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/ (행정) 1차 어업정지 30일, 2차 45일, 3차 60일
- 「수산업법」제60조 어구의 규모 위반(불법어구 사용 등)
* (사법) 1천만원 이하의 벌금 / (행정) 1차 어업정지 30일, 2차 45일, 3차 60일
- 「수산업법」제63조 허가 이외 어업 (변형어구 사용 등)
* (사법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/ (행정) 1차 취소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제24조 불법 어구적재
* (사법) 1천만원 이하의 벌금 / (행정) 1차 어업정지 30일, 2차 45일, 3차 60일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10조 무면허(면허구역 이탈 양식장 설치, 조업 등)
* (사법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/ (행정) 1차 경고, 2차 경고, 3차 취소